

■ 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[별지 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(앞쪽)

제 호	조사공무원증	사진 (2.5cm×3cm)
소 속 :		
직 명 :		
성 명 :		
유효기간 :	. . .부터 . . .까지	
위 사람은 「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		
년 월 일		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(인)		

93mm×65mm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(뒤쪽)

주 의 사 항

1.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2. 본 증은 「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 16조제2항의 확인조사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